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14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5년) 수립·시행 등	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1일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애로가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가사근로자 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5년) 수립·시행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이라는 제목의 제1장의 2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21조의 실태조사를 제6조의3으로 이동시켜 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u>“가사서비스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u>

<신 설>

<신 설>

제1장의2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제6조의2(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근로

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

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목표와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가사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화에 관한 사항

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

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

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신 설>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사근로자 고용개
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
항(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
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
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
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
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 (생략)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 고용정책심의회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
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
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
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
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자

2. ~ 8. (생략)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10. (생략) ② ~ ⑥ (생략)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 (생략)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생략)	<u>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u> 2. ~ 8. (현행과 같음) <삭제>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	--

③ · ④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생략) 2. (생략)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관련하여 정부

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는 등 이 법의 제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가사근로자”를 정의하면서 이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현행법 제정 이전의 개념으로서 가사근로자와 대비되는 “가사서비스종사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②제20조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처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사용인’ 형태로 일하던 종사자를 정부 인증기관의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고용안정·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여 현재 정부 인증 전환을 위해 부가세 면세, 사회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가사사용인’인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 대책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하여는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¹⁾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내에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동 전문위원회에서 가사근로자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여 수립·시행하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실태조사는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현행 제21조에 따라 필요하면 기본계획 수립 시 언제든지 실태조사 결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문 의 처
02)6788-5542